
중요 정보서비스 재해복구용 DRS 센터
환경관제 시스템 구축
규격서

2024. 8.

동국대학교

I 용역개요

1. 개요

- 가. 용역명 : 동국대학교 중요 정보서비스 재해복구용 DRS 센터 환경관계 시스템 구축
- 나. 용역기간 : 계약 후 2개월 이내

2. 추진 배경

- 가. 정보서비스 재해복구(DRS) 시스템 기반 마련
- 나. DR센터 물리적 보안 구축을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준수

3. 사업 내용

- 가. DRS 센터 물리적 보안 구축
- 나. 출입통제, DRS 센터 물리적 환경 사항 파악

4. 기대 효과 : 정보시스템의 기반구조의 최신화, 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안체계 안정성 유지

II 과업 내용

■ 납품 대상 목록

번호	품 목	수량	비 고
1	지능형카메라 및 라이선스	2식	
2	출입통제Access Control	1식	
3	출입통제Access Control 라이선스	2식	
4	카드 리더	1식	
5	환경센서 및 라이선스	2식	

※ 납품 및 설치완료하여 운용가능한 상태로 구축.

도입 제품 규격

가) 시스템 요구사항

요구사항 번호	ECR-01
요구사항 분류	관제시스템
요구사항 명칭	DR센터 관제 구축
상세 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통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사업에 납품되는 카메라와 출입통제, 환경 센서는 향후 관리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단일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 납품하여야 한다. - 본 사업에 납품되는 카메라와 출입통제, 환경 센서는 연동하여 하나의 관리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. - 출입통제와 환경센서는 카메라와 연동되어 이벤트 발생 시 동영상으로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. - 간단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서버 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관리 기능을 구현해야 함. -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전송되어진 영상은 별도의 저장소나 분석 장비 없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. - 맵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와 상태를 표기해야 한다. - 평면도를 이용하여 건물에 설치된 카메라와 출입통제 장치의 위치와 상태를 표기해야 함. ○ 카메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도의 전원 없이 POE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. - 열악한 환경에서도 카메라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카메라 하우징은 IPXX 이상의 보호 등급을 지원하여야 한다. - 10년간의 Hardware Warrnaty를 제공해야 한다. - plug-and-play 복잡한 설정 없이 간단하게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. - 저장 용량 최적화를 위하여 H.265 codec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. - 녹화된 영상은 카메라에 저장되어야 하며 30일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. - 지난 하루동안의 영상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Timelapse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- 마우스를 움직여 빠르게 영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. - 차량의 색깔, 종류를 선택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-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. -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카메라 모니터링 화면에서 쉽게 다른 카메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. - 사람이나 차량의 출몰 빈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로 표기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. - 특정 출입구에 라인을 그어 해당 라인을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의 수를 세고 통계를 낼 수 있어야 한다. 또 통계에 연결된 동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 - 영상 분석을 위한 중요 영상클립은 저장하는데 용량 제한과 저장 제한이 없어야 한다 - 하나의 사건을 분석하고 리포트 하기 위해 여러 화면을 묶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. - 여러 묶인 동영상에서 탐지되는 사람과 차량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 - 실시간 화면을 손쉽게 이메일, SM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. - 사건에 대한 프로젝트 전체와 리포트를 손쉽게 이메일, SM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야 함. - 보안을 위하여 카메라의 일부 기능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. (관리자가 다시 활성화 하지 못하는 비활성화가 아닌 제거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메라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. - 네트워크 대역폭을 카메라별,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. - 대역폭 감소를 위하여 내부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 카메라와 모니터링 장비 간에 클라우드 연결 없이 직접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. ○ 출입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메라와 연동되어 출입 이벤트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- 하나의 카드로 두 명 이상이 출입하는 Tailgating (꼬리물기)를 탐지하고 이 행위를 카메라와 연동하여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- 별도의 센서 없이 CCTV 카메라와 연동하여 꼬리물기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. - 사용자 별로 출입한 로그를 쉽게 찾아 사용자 동선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- 4개의 문을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. - 일반 PROX 카드를 지원해야 한다. - 모바일 패스 앱을 이용하여 출입통제를 지원해야 한다. -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수치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해야 한다. - 데이터센터, 기계실의 온도, 습도, CO2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- 데시보드를 통하여 그래프 화면으로 주요 측정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. - 측정값의 임계값을 지정하고 임계값이 넘을 경우 알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-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수치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해야 한다. - HVAC, Building Management System과의 연동을 위하여 BACnet 프로토콜을 제공해야 함. - 카메라와 연동되어 온도, 습도, CO2 값이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
적용여부	필수

나)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

PMR-001	
요구사항 명	인력 교체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동국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▪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

PMR-002	
요구사항 명	사업관리방법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위험관리, 품질관리, 일정관리, 자원관리,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▪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▪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 해야 함

PMR-003	
요구사항 명	일정계획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
산출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수행계획서

PMR-004	
요구사항 명	요구사항관리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자는 기능/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,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(요구사항 추적)하여야 함

PMR-005	
요구사항 명	위험관리 방안 제시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,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,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,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

PMR-006	
요구사항 명	정기보고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, 진척사항,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, 월간 단위로 작성·제출하여야 함
산출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간/월간보고서, 착수/중간/완료보고서

PMR-007	
요구사항 명	수시보고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하거나 우리 대학의 수시보고 요청에 대응
산출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시 보고서

PMR-008	
요구사항 명	산출물 관리방안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, 주요내용, 작성 및 제출시기, 제출 부수,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-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-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, 품질보증 계획,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

PMR-009	
요구사항 명	품질보증활동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(QAO, Quality Assurance Officer)가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 함 - 품질보증계획 수립,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-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,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, 변경요청 -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,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
산출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품질보증계획서

PMR-010	
요구사항 명	검수 및 검사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- 협상 결과, 계약서,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▪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침서(한글파일로 제공)를 검수 이전에 제공해야 함

PMR-011	
요구사항 명	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▪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
산출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안서약서

PMR-012	
요구사항 명	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- 중요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

PMR-013	
요구사항 명	외부 PC 반입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부PC(노트북 등) 반입 시 우리 대학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▪ 개발용 PC, 노트북 등의 사용현황을 우리 대학에 신고관리 해야 함 ▪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▪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우리 대학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

PMR-014	
요구사항 명	해킹,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킹,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▪ 사업기간 중 불법S/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

PMR-015	
요구사항 명	사업 관련 자료 보안 방안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,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

PMR-016	
요구사항 명	시건장치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▪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

PMR-017	
요구사항 명	기타
영역	프로젝트관리
요구사항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사는 사업 실행 관리, 품질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-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가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-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, 상호 협의하여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- 제안사는 납품 제품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품 및 개발을 제안할 수 있고,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-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, 기술적 제약사항, 수행사측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에 제안 함할 수 있음 -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해야 함 - 보고서, 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 사용하여야 하며, 세부사항은 사업 착수 후 동국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

본 규격서에서 편의상 주관기관(동국대학교)을 “대학”이라 하고 구축사업자를 “구축사”라 칭한다.

1. 목 적

본 규격서는 “중요 정보서비스 재해복구용 DRS 센터 환경관제 시스템 구축 ”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모든 규격은 본 규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“대학”의 지시에 따라 “구축사”가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 계약자 준수사항

- 가. “구축사”는 계약 전에 본 규격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·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의문사항은 반드시 “대학”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“대학”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나. “구축사”는 본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시켜야 한다.
- 다. 본 규격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, 누락된 사항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“구축사”는 즉시 “대학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라. “구축사”는 “대학”과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,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“대학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“구축사”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처리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.
- 바. “구축사”는 면허, 특허권, 등록된 의장권, 공업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“대학”을 전적으로 면책시키고 “구축사”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- 사. “구축사”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3. 설치방법

- 가. “구축사”는 “대학”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, 설치하여야 하고 “구축사”가 납품하는 물품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단종되는 제품이어서는 안 되며 제품의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“구축사”가 부담한다.
- 나. “구축사”는 “대학”의 기존 통신 및 제반환경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제품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
- 다. “대학”은 설치제품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,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구축사”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.
- 라. 제품의 설치는 “대학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며,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, 소모품 등은 “구축사”가 제공하여야 한다.
- 마. 제품 설치 후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, 제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바. “구축사”는 “대학”이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성능이 미달하여,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“대학”의 요구에 의해 “구축사”는 납품·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“구축사”의 부담으로 한다.

4. 기술/교육 지원

- 가. “구축사”는 “대학”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미한 장애조치 등 해당 장비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나. “구축사”는 도입 시스템과 관련하여 교육의 내용, 일정,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“대학”과 사전에 협의한 후,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다.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“구축사”가 부담하고 “대학”이 추가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수용하여야 한다.

5. 유지보수

- 가. “구축사”는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고 공급 품목별 무상 유지보수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해 무상 유지 보수 및 정비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“구축사”는 24시간 정상운영 지원, 장애 응급대처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운영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“대학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“구축사”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, 장애 신고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장애 신고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.
- 라. “구축사”는 장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“대학”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“구축사”는 월 1회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“대학”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바. 유상유지보수요율은 무상유지보수기간 이후 도입 금액의 10% 이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.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대학의 사정으로 확장 및 이전 구축 등을 할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하며, 무상유지보수기간 이후에라도 시스템의 확장, 타 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6. 보안대책

- 가.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은 “대학”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나. “구축사”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각서를 대표자 책임 하에 “대학”에 제출하여야 하며, 참여 직원의 신원확인에 응하여야 한다.
-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1부 (첨부 양식)
- 다. 참여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, 교체 시에는 “대학”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.
- 라. “구축사”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중 취득한 “대학”의 보안 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, 네트워크,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, 제공받은 자료는 관련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마. 참여 인력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는 “구축사”가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바.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“대학”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, 부정당업자 지정 및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 조치를 수용해야 함
- 사. 사업자 및 투입인력은 “대학”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“대학”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아. “구축사”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.
-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: 3월
 -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: 1월

<누출금지 정보의 범위>

- ① 대학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·외부 IP주소 현황
 -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
 -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
 -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
 -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
 - ⑥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
 - ⑦ 방화벽, 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
 - ⑧ 라우터,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
 - ⑨ 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’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
 - ⑩ ‘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’ 제2조2호의 개인정보(2011.9.30. 이후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2조1호의 개인정보)
 - ⑪ ‘보안업무규정’의 대외비
 - ⑫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
 - ⑬ 기타 대학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
- ※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

자. “대학”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정책자료 등 “대학”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및 관련자는 “대학” 보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, “대학”은 보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 및 관련자에게 사법기관 신고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7. 검사 및 검수

- 가. “구축사”는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장비의 설치 및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“구축사”는 납품 및 설치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하며,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.
- 다. 검수는 검수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하고 현장 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문제점에 대하여 “구축사”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, 수정 및 보완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시정·조치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라. 최종 검수 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“대학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대학”의 요구에 의해 “구축사”는 “구축사”의 부담으로 설치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, 기존 장비는 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마. 검수 완료 후에도 “구축사”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축사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

8. 납품제품 교체조건

- 가. 제품 설치 후 주 2회 이상 혹은 월 3회 이상 동일한 종류의 장애 발생시 “대학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대학”의 요구에 의해 “구축사”는 “구축사”의 부담으로 설치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, 기존 장비는 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9. 제출서류

- 가. “대학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“대학”은 “구축사”에게 해당 산출물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출 서 류 명	수량	형태	제 출 시 기	비고
보안각서	1부	A4	계약 시	
사업수행계획서 (납품일정, 세부작업 공정표 등이 포함)	1부	A4	계약 후 7일 이내	
장비, S/W 별 안분내역서 (각 부품 혹은 라이선스별 금액 명시)	1부	A4	계약 시	
구축완료 보고서 - 구축 장비 세부 규격 - 구성도 및 관련 설정내용 - 구축완료 관련 사진 - 납품내역서 - 기술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 체계도	각 1부	A4	검수 3일전	
관리(사용자)/사용자 매뉴얼	1부	A4	검수 3일전	

10. 기타사항

- 가. “대학”은 “구축사”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나. 변경은 “대학”이 작성하고 “구축사”가 확인서명한 공식적인 수정계약서로 기록 되어
져야 한다.
- 다.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“구축사”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
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하며 “대
학”과 “구축사”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“대학”의 계약 담당자의 해석에 따
른다.
- 라. 본 규격서에 대하여 “대학”과 “구축사”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
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“대학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
한다.

Ⅲ 문의처

1. 입찰 및 계약 관련 : 구매관재팀 이재우 (☎ 02-2260-3090)
2. 기술관련 : 정보운영팀 문상국 (☎ 02-2260-3907)